

2025년 2분기 예산 보고

2025. 9.

민생노동국

1

2025년 2분기 예산전용 보고

□ 보고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 2
(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 보고내용 : 2025년 2분기 민생노동국 예산전용 내역
 - 예산전용내역 : 총 2건, 443,000천원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용액		승인일
				증	감	
계				443,000	443,000	
소상공인 정책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1,000,000		227,000	2025.4.10.
		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위탁사업비 (308-13)	-	227,000		
상권 활성화과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3)	1,866,640	-	216,000	2025.5.21.
		사무관리비 (201-01)	201,000	216,000	-	

□ 전용 사유

- 서울배달+ 땡겨요 홍보 콘텐츠 매체 비용 집행
 - 「정부광고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는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해야 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227백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함
- 로컬브랜드 상권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가치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의 **추진주체 일원화**(신보·서울시 → 서울시)
 - 당초 1년차 기본과정(로컬인서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2년차 심화과정(후속컨설팅) 및 사업화자금 지원은 서울시가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 사업 연속성 확보, 관리 효율성을 위해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함.

□ 보고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 보고내용 : 2025년 2분기 민생노동국 간주처리 내역
 - 간주처리내역 : 총 3건, 54,180천원

□ 간주처리 상세내역 및 사유

- 제2차 : 3건, 54,180천원
 -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53,500천원)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및 토론회, 청소년 노동인권 체험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 2월 고용노동부 국고보조 교부 결정에 따라 간주처리
 -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833(2025.2.25.)호
 - 기본형 공익직불금 운영비 지원(480천원)
 - 직불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직불 지급 결과를 반영한 '25.2월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 교부 결정에 따라 간주처리
 -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430(2025.2.6.)호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200천원)
 - 직불사업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검사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2월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 교부 결정에 따라 간주처리
 -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428(2025.2.6.)호

붙임 : 간주처리 세부 내역 및 근거 서류(교부결정 통지 공문) 각 1부

○ 제2차 간주처리 세부 내역

- 세출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3,300) 3,300	(×54,180) 54,180	(×57,480) 57,480
노동존중 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307-05)	(×-) -	(×53,500) 53,500	(×53,500) 53,500
도시생활 속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 금 운영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3,300) 3,300	(×480) 480	(×3,780) 3,780
도시생활 속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공익직불 제 이행점검	재료비 (206-01)	(×) -	(×200) 200	(×200) 200

○ 제2차 간주처리 내역 알림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 회계연도 제2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알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송부합니다.

* 각 사업부서에서는 확정된 간주처리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붙임 2025 회계연도 제2차 간주처리 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원순환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공의료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미래첨단교통과장, 노동정책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양성평등담당관, 가족담당관, 일자리정책과장, 재난안전예방과장, 주택정책과장, 임대주택과장, 주거정비과장, 자연생태과장, 동물보호과장, 산지방재과장, 서울특별시의회(의사담당관), 한성백제박물관장(총무과장), 서울도서관장(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

주무관 노현지 예산총괄팀장 최은정 예산담당관 04/22 김설희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4947 (2025. 4. 22.) 접수 노동정책과-4797 (2025. 4. 22.)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15 /전송 02-768-8824 / hjro@seoul.go.kr / 부분공개(5)

○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53,500천원)

한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고용노동부

고 용 노 동 부

수신 서울특별시장(노동정책 과장)

(경유)

제목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차 교부 통지(서울특별시)

1. 관련: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심사결과 통보 및 교부신청 안내(서울)(노동정책과-2958, 2025.3.11.)

2. 귀 지자체의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오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붙임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사업 수행성과 평가보고서 양식이 붙임과 변경되었으니, 실적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식개선 사업 실적 추가, ▲기간별 실적 추가, ▲고용센터·노동청·이음센터 등 연계 실적 추가, ▲법률구조 절차를 통한 구제 실적 추가, ▲경영약자 교육 실적 추가

3. 아울러 '근로자이음센터'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프리랜서 분쟁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근로자이음센터와 협업할 수 있도록 연계·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고보조금 1차 교부 결정 통지서(교부조건 포함) 1부.

2. 국고보조금 1차 교부결정 세부내역 1부.

3. '25년 수행성과 평가보고서 변경 양식 1부.

4. 근로자이음센터 안내문 1부. 끝.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주무관 최건혁 행정주사 이재근 서기관 대결 2025. 3. 21. 노사협력정 박경구 직파장 직결

협조자

시행 노사협력정직파-1303 (2025. 3. 21.) 접수 노동정책과-3429 (2025. 3. 21.)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개발협력지원팀

전화 044-202-7635 /전송 044-202-8026 / gunhee6206@korea.kr / 비공개

국고보조금 1차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보조사업자)

1.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 사 업 기 간 : 2025. 3월 ~ 2025. 12월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사회복지	08E 노동	2000 노사정책	2031 노사협력	303 노동약자지원	30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원)

세부사업명	교부결정금액
* 세부내역 별칭	53,499,6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교부조건

<일반사항>

-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 6) 보조사업자는 **매정비 확보이전에 국비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나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주도에 따라 전체 사업비 및 세부사업별로 **지방비 비율이** 모든 자치단체는 **10~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재정자주도	부담율
광역	50% 미만	10%
	50% 이상 70% 미만	20%
	70% 이상	30%

구분	재정자주도	부담율
기초	60% 미만	10%
	60% 이상 70% 미만	20%
	70% 이상	30%

<보조사업 집행>

-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시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 해당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5)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청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체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25년 노동의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부조건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 및 모든 서류의 제출일자 준수 여부는 사업평가결과와 차기년도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심사에 반영되오니, 교부조건 및 심사내용에 제시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본형 공익직불금 운영비 지원사업(480천원)



철학거리는 만포하게 철철심현은 말말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도 공익직불사업 지자체 행정경비 국가보조금 교부결정

1. 관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2. 공익직접지불제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자체 행정경비를 불임과 같이 교부하니, 각 시·도는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농협경제지주는 국고보조금을 각 시·도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2025년 공익직불사업 지자체 행정비 교부결정서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수신자 직을 시도, 농협경제지주

주무관	김대술	시무관	박상호	공익직불금 선입 2025. 2. 6.	
				최과장	박나영
협조자					
시청	공익직불정책과-430	(2025. 2. 6.)	전수	농수산유통과-1884	(2025. 2. 6.)
주	301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	044-201-1782	/전송	044-868-9420	/ dskim1206@korea.kr	/ 비공개
합치게 노력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시장·군수·구청장

1. 「2025년 공익직접지불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행정비)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 하니 불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공익직접지불제도 사업관리비(행정비)

☐ 보조 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종자	수익자부담
공익직접지불제도 사업관리비(행정비)	10,432,000	10,432,000	-	-	-

◦ 보조비율 : 국고 100%

◦ 사업내용 : 전산입력 보조원 인건비, 등록관리심사위원회 운영비 등 공익
직접지불제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경비 지원

☐ 교 부 목 적 : 공익직접지불제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예 산 과 목 : 농업·농촌 공익가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 부사업	목 · 세목
100 농림축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71 농가소득보전 (직불기금)	330 사업 관리비	330-01 지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 원)

세 부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공익직접지불제도 사업관리비(행정비)	10,432,000	-	10,432,000	10,432,000	-	

□ 지자체별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 원)

시·도	예산액 (연간교부결정총액)	자 금 교 부		
		기교부	금회교부	누 계
서울특별시	3,780	-	3,780	3,780
부산광역시	31,816	-	31,816	31,816
대구광역시	112,308	-	112,308	112,308
인천광역시	102,881	-	102,881	102,881
광주광역시	83,739	-	83,739	83,739
대전광역시	28,025	-	28,025	28,025
울산광역시	82,416	-	82,416	82,416
세종특별자치시	69,000	-	69,000	69,000
경기도	896,375	-	896,375	896,375
강원도	540,096	-	540,096	540,096
충청북도	740,260	-	740,260	740,260
충청남도	1,285,218	-	1,285,218	1,285,218
전라북도	1,135,644	-	1,135,644	1,135,644
전라남도	1,774,000	-	1,774,000	1,774,000
경상북도	1,929,300	-	1,929,300	1,929,300
경상남도	1,338,800	-	1,338,800	1,338,800
제주특별자치도	278,342	-	278,342	278,342
합	10,432,000	-	10,432,000	10,432,000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200천원)

합작거점촌 만조하게 협정실현촌 달달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 공익직불사업 토양검사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1. 관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2. 공익직불사업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사항 관련 지자체 토양검사비를 불임과 같이 교부 결정하오니, 농촌진흥청 및 각 시·도에서는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농협경제지주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각 시·도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2025년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 교부계획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농촌진흥청장, 직물 시드, 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도 농림축산식품경제지주



주무관	김다슬	사무관	박상모	공익직불제 사업 2025. 2. 6.
			책과장	박대영

첨부자

시행 공익직불제책과-428 (2025. 2. 6.) 접수 농수산유통과-1885 (2025. 2. 6.)

주 30110 서울특별시지치시 마을2로 94 (여진출) / <http://www.mafra.go.kr>

전화 044-201-1782 / 전술 044-868-9400 / diskim1208@korea.kr / 팩시밀

합작계 도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 하는 농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시·도(농업기술원장 및 농업기술센터장)

1. 「2025년 공익작업지불제도」 추진을 위한 보조금 요청금(바)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
하니 불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직불제 이행점검(토양검사비)

☐ 보조 사업자 : 시·도(농업기술원장 및 농업기술센터장)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직불제이행점검(토양검사비)	1,792,000	1,792,000	-	-	-

○ 보조비율 : 국고 100%

○ 사업내용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 교 부 목 적 : 공익작업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양검사비 지원

☐ 예 산 과 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농림축산	101 농업·농촌	1000 농가경영안정	1071 농가소득보전 (직불기금)	301 직불제이행점검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직불제이행점검 (토양검사비)	1,792,000	-	1,792,000	1,792,000	-	

□ 지자체별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예산액 (연간교부결정총액)	자 금 교 부		
		기교부	금회교부	누 계
서울특별시	200	-	200	200
부산광역시	3,740	-	3,740	3,740
대구광역시	17,530	-	17,530	17,530
인천광역시	17,720	-	17,720	17,720
광주광역시	9,250	-	9,250	9,250
대전광역시	3,350	-	3,350	3,350
울산광역시	10,440	-	10,440	10,440
세종특별자치시	7,680	-	7,680	7,680
경기도	135,290	-	135,290	135,290
강원도	107,320	-	107,320	107,320
충청북도	114,020	-	114,020	114,020
충청남도	247,140	-	247,140	247,140
전라북도	226,260	-	226,260	226,260
전라남도	335,750	-	335,750	335,750
경상북도	317,050	-	317,050	317,050
경상남도	205,390	-	205,390	205,390
제주특별자치도	33,870	-	33,870	33,870
계	1,792,000	-	1,792,000	1,792,000